문서번호	보건의약과-6662
결재일자	2016.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34호

주 무 관	의료사업팀장	보건의약과장	동작구보건소장	부 구 청 장
차수경	장시화	조경숙	모현희	04/15 정연찬

협조	규제개혁팀장	이정례
	주무관	김경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조례**
- **개정근거**
  - 학생치과주치의사업추진 자치구 선정[서울시 건강증진과-5188호('16.3.7)]
- **주요 개정내용**
  - 사업내용 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1조 ~ 제7조 개정**
  - 사업대상자 확대(저소득층의 범위 및 학생추가)
- **추진일정**
  - 조례 입법 예고 및 조례심의 : '16. 4~5월
  - 구의회 상정·심의 및 공포 : '16. 5~6월

동작구 보건소
(보건의약과)

사전 검토사항

해당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시 건강증진과-5188 학생치과주치의사업추진 자치구 선정)	
사업추진 유 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년)	
예산확보 사 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국 , 시 , 구) ■ 비예산 사업	예산팀 협 조 ( )
이해관계인 유 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 자 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 보 필 요 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 보도자료 : 유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1.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기의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해 지역 치과의원을 등록하여 예방중심의 계속 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서울시건강증진과-5188(2016. 3. 7)호 관련 학생치과주치의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에 국한되어 있던 사업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까지 확대

Ⅱ 관련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5항(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제1항(구강건강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Ⅲ 주요 개정내용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4조)

-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지원대상(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4조) :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학생치과주치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임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지역 협의체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음

Ⅳ 개정내용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
제2조(정의) 1. “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정책의 방향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
제5조(지원액)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액) -----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8조에 따른 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 ①학생 치과주치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예방진료,구강보건교육,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②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제8조에 따른 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의료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제14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14조(환수조치)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등 의료 지 원 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 ---------- --.

V 향후 추진 일정

- 2016. 4. 07 ~ 4. 9 : 조례개정 방침수립
- 2016. 4. 07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2016. 4. 14 ~ 5. 4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016. 5. 06 : 조례규칙심의회
- 2016. 5. 20 ~ : 조례개정안 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6. 6월 : 조례 공포 및 구보게재

붙임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1부. 끝.